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77 발의연월일: 2025. 3. 21.

발 의 자: 민형배·정동영·양부남

이개호・김문수・안도걸

조계원 · 손명수 · 소병훈

김성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당과 시·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마련함에 따라, 현행법에 지역 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 다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9275호) 및 「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927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6항 후단 중 "시·도당창당승인취소"를 "시·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"로 한다.

제50조제1항 단서 중 "시·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"를 "시·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 외의"로 한다.

제52조제1항제6호 중 "시·도당창당승인취소"를 "시·도당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"로 한다.

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앙당 및 시·도당"을 "중앙당, 시·도당 및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6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중앙당 또는 시·도당"을 "중앙당, 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제112조제2항제1호바목 중 "시·도당의 대표자"를 "시·도당이나 지역당의 대표자"로 하고, 같은 호 하목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지역당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"중앙당 또는 시·도당"을 "중앙당, 시·도당 또는지역당"으로, "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·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"를 "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·도당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, 시·도당 대표자의

경우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간부를 포함한다"로, "중앙당 대표자의경우 시·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"를 "중앙당 대표자의경우 시·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를 포함하여, 시·도당 대표자의경우 지역당 대표자를 포함한다"로 한다.

제144조제1항 단서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역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⑤	제49조(후보자등록 등) ① ~ ⑤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⑥ 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	6
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, 候	
補者登錄期間 중(候補者登錄申	
請시를 포함한다) 黨籍을 離脫	
・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	
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	
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.	
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	
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<u>시・도</u>	시·도당
<u>당창당승인취소</u> 로 인하여 黨員	창당승인취소 또는 지역당창당
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	<u> 승인취소</u>
같다.	
⑦ ~ ⑤ (생 략)	⑦ ~ ⑤ (현행과 같음)
第50條(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	第50條(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
경의 금지) ① 政黨은 候補者	경의 금지) ①
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	
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	
수 없으며, 比例代表國會議員候	
補者名簿(비례대표지방의회의	
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. 이하	
이 항에서 같다)에 후보자를	

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수 없다. 다만,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·死亡하거나, 所屬政黨의 除名이나中央黨의 시·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,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52조(등록무효) ① 候補者登錄 7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 脫·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(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),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·도당

시·도당창당승인취
소 또는 지역당창당승인취소
외의
② (현행과 같음)
제52조(등록무효) ①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,}
시·도당창

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

7. ~ 11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第61條(選擧運動機構의 設置)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各號 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 락소를,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, 정당은 <u>중앙당 및 시·도당</u>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.

- 1. ~ 6. (생략)
- ② ~ ⑦ (생 략)

제61조의2(정당선거사무소의 설 치)① · ② (생 략)

③ <u>중앙당 또는 시·도당</u>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.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한다.

당당인취소 또는 시역당상당
승인취소
 7. ~ 11. (현행과 같음)
① ~ ④ (현행과 같음)
第61條(選擧運動機構의 設置) ①
先01际(送季建勤傚件A
<u>중앙당,</u> 시·도당
및 지역당
<u>太 / 1 寸 0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1조의2(정당선거사무소의 설
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앙당, 시·도당 또는 지역
 당
<u>~</u>

- 1. ~ 4. (생략)
- ④ ~ ⑦ (생 략)
- 第112條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第 (생 략)
 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 지 아니한다.
 - 1.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

가. ~ 마. (생 략)

바.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 하는 당직자회의(구·시· 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 급 간부와 시·도수의 10 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) 또는 <u>시·도당의</u>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(읍·면·동단위 이상 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·시·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) 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

•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5112條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
(현행과 같음)
2
<u>.</u>
1
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바
시·도당이나
<u>지역당의 대표자</u>

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
사. ~ 파. (생 략)

하.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 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<u>시·</u> 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기관·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

거. (생략)

- 의례적 행위
 가. (생략)
 - 나.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·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(중 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·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)·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

		(-1 -1) -1 -1 6)
	·	~ 파. (현행과 같음)
	or.	
		시·도
		<u> </u>
		<u> </u>
	거.	(현행과 같음)
2.		
	·	(현행과 같음)
	나.	<u>중앙당,</u>
		<u>시·도당 또는 지역당</u>
		조시미 레포키시 거 이 기
		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
		드다 미 기어다시 네ㅍ
		·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 기의 사고 가부를 고하된
		도당 및 지역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하며, 시・도당 대표자의 경

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· 부의금품(화환 또는 화분 을 포함한다)을 제공하거 나 해당 유급사무직원(중 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· 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) 에게 연말·설·추석·창 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 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 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

다. ~ 파. (생 략) 3. ~ 6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第144條(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) ① 政黨은 選舉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. 다만, <u>시·도</u>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·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근간부를 포함한다
<u>중앙당</u> 대표자의 경우
시・도당 및 지역당의 대
표자를 포함하여, 시·도
당 대표자의 경우 지역당
대표자를 포함한다
_
다. ~ 파. (현행과 같음)
3. ~ 6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第144條(政黨의 黨員募集 등의
제한) ①
시·도
<u>당 또는 지역당</u>